

의안번호	제 5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오영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8년 10월 2일

#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## (오영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10월 2일  
발 의 자 : 오영탁 · 이수완 · 윤남진  
김기창 · 박병진 · 연종석  
이옥규

### 1. 제안이유

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유아 숲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나.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- 다. 유아숲체험원의 조성·운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
(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)
- 라. 유아 숲 교육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)
- 마. 유아 숲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
3. 조례안 : 불입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불입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환경산림국 산림녹지과와 협의

라. 입법예고 : '18. 9. 21. ~ '18. 9. 27. (의회홈페이지)

##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아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아 숲 교육”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.
3. “유아숲체험원”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·교육하는 시설로써 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에 조성하고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)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2.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
4.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
6.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유아숲체험원 조성·운영 등)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(이하 “체험원”이라 한다) 규모는 5천㎡ 이상으로 도내 수목원, 자연휴양림, 산림공원, 도시공원 및 산림 등을 체험원으로 조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,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, 산림복지전문업 등에 체험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추진 등)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
2.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
3.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4.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

5.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)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
1.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
3.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

4. 시·군, 충청북도교육청, 민간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산림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

2.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

3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

4.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

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인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숲 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·군, 충청북도교육청,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 법령

### [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

2. 21.>

1. "산림교육"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·탐방·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2. "산림교육전문가"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숲해설가: 국민이 산림문화·휴양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산림문화·휴양을 말한다)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·교육하는 사람

나. 유아숲지도사: 유아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(全人的)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·교육하는 사람

다. 숲길등산지도사: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(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·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·교육하는 사람



3. "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"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)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·교육하는 시설(이하 "유아숲체험원"이라 한다)을 조성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·소재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: 산림청장

2.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: 시·도지사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(산림청장은 제외한다)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

2. 21.>

④ 시·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2. 21.>

-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- ⑥ 시·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-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